

사례를 통해 본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조사연구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언론으로부터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서나 언론사가 사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는 꼭 필요한 장치이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사법적인 구제나 언론사의 자율적인 구제를 내세워 언론중재제도의 불용론을 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제 방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동안의 언론중재신청사례의 처리결과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사법적 구제나 자율적 구제가 비자율적인 반면에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자명해진다

I 종합적으로 본 필요성

1. 사전심사나 규제제도가 아니며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피해자 구제장치이다.
2. 사법적 해결에 앞선 전치제도로써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분쟁을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는점에서 쌍방간에 유익하다.
3. 사법적 해결에 의한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역시 쌍방간에 유익하다
4. 사법적인 구제는 3심 제도를 감안할 때 1년 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하므로 피해회복의 실효성이 없다.
5. 대부분의 피선자들이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기피 또는 원치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언론중재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언론침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6. 앞으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자유화되면 매체수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침해사례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7. 공식 · 비공식석상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8. 지난 수년 동안 지방의 10개 중재부에서 20회에 가까운 토론회를 가진 바 있는데, 참석자(한 토론회에 약 50명)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된 기능을 요구하고 있었다

9. 선진 외국에서도 민·형사상 구제 외에 신속한 피해자구제를 위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 신문지법 제 11 조는 반론문 게재청구권을 규정,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의 구제처치를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해, 보도된 사실에 관한 정정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정문은 요구가 있는 날 이후의 최근호에 원문게재의 장소에 동일한 크기의 활자로 게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행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게재료는 무료이다.

나. 본(Bonn)기본법 제 5 조 제 1 항은 보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2 항은 이 권리에 대한 법률의 유보를 정해 개인적인 명예권에 의해서도 이들 권리가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출판법 제 13 조는 반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가. 신문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의 직무행위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를 한 경우, 요구되는 정정보사를 무상으로 원기사의 2 배 이내에서 게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360~3,600 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 신문,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 이름이 게재된 모든 사람의 반론을 3 일 이내에 게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게재는 원 기사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활자로 무상으로 한다. 위반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다. 신문 등이 게재를 거부한 때에는 게재 희망자는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에 대한 재판은 소환 후 10 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되며, 가집행선언이 부가될 수 있다. 상소의 재판은 신청 후 10 일 이내에 열린다.

II. 사법적인 구제에만 의존하는 경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

1. 3 심까지 거쳐야 하는 일반소송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신속을 요하는 피해회복에 부적합하다. 오보나 허보에 의해 침해를 받은 사람은 단시일 내에 정정보도가 돼야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피해회복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 동안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한 사건을 보면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절차에 의해 결정을 얻어내는 데도 평균적으로 보아 3 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있다. 그런데 일반소송방법에 의한 피해회복을 받으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가령 1 심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언론사측이 2 심, 3 심에까지 끌고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1 년, 2 년의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피해회복은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다

2. 다음은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좋아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기에는 힘이 모자라는 사람들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회복의 중재를 신청한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의 58%가 소시민계층이며, 영세업자 19%, 자립도가 낮은 일반단체 13%를 합치면, 약 90%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소송능력이 미약한 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재 불성립사건 121 건 중 30%인 37 건만 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심판을 청구하여 사법적인 구제를 시도했을 뿐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84 명은 피해회복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침해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表-1〉

(’81. 3. 31-’87. 7. 31)

불성립 사유	신청인 불출석	피신청인 불출석	쌍방 불출석	신청인 합의불응	피신청인 합의불응	신청인 피신청인 합의불응	계
건수 (%)	10 (8.3%)	27 (22.3%)	11 (9.1%)	4 (3.3%)	62 (51.2%)	7 (5.8%)	121

〈表-2〉

(’81. 3. 31-’87. 7. 31)

취하 사유	자진 취하		압력 취하	회유 취하		계
	취하권 정정보도로 인하여	신청인 개인상의 이유로 인하여	유관기간 사적당국율 동원함으로써	호의표시나 사과에 의하여	경정보도나 기사 게재를 약속함으로써	
건수 (%)	20 (17%)	16 (14%)	25 (22%)	24 (21%)	30 (26%)	115

III. 침해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구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증적인 이유

언론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고 중재위원회에 분쟁중재를 요청해 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회복을 시켜주어야 한다. 그런데 중재신청사건 351 건 중 중재에 의한 쌍방간의 합의율은 2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5%의 기각과 각하를 제외하고 35%가 불성립, 37%가 취하로 처리되었다. 중재 불성립의 주된 원인은 <표 1>에서 보듯이 피신청인인 언론사측의 불출석에 의한 경우가 22.3%, 피신청인이 합의에 불응한 경우가 51.2%로, 전체의 72%가 피신청인의 성의부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51.2%의 합의에 불응한 경우의 대부분이 언론사측에서 크건 작건 간에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정정보도를 기피한 것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중재신청건수의 33%를 점하고 있는 취하의 경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진취하는 31%에 불과하며, 압력이나 회유에 의한 취하가 69%로 압도적으로 많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피해회복을 해주려는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중재 불성립과 취하의 원인으로 볼 때 언론사측이 자율적으로 피해회복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된다.